

1. 상황 개요

21년 11월 6일, 1차 견적 금액 총 1100만원 계약 후 30% 카드 결제

21년 11월 25일, 계약 담당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확장할 것을 권유하며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다고 통화함 (녹취록 보유)

21년 11월 26일, 공사 범위를 확장하여 총 2500만원 계약으로 변경하고 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추가 계약금 170만원 계좌 이체(총 계약금 500만원 지급, 현금영수증 미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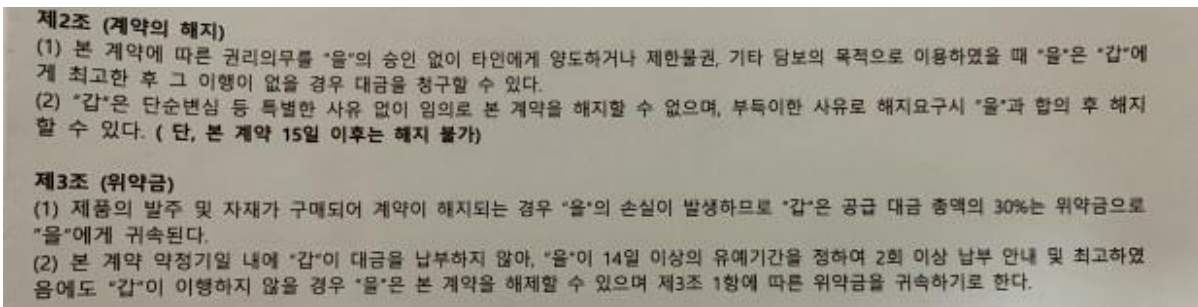
22년 4월 23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아래 1차 계약서 조항을 언급하며 계약금 전액 반환 거부 (단, 아파트 준공 전으로 인테리어 상담이나 제품 발주 일체 없음)

22년 5월 4일, 아래 확인된 업체 상황을 기반으로 계약 담당자 및 1차 계약 시 카드 결제한 명의자와 사업자 주소를 참고하여 계약 해지 통고 내용증명 발송

2. 계약서 내 관련 내용 - 제2조,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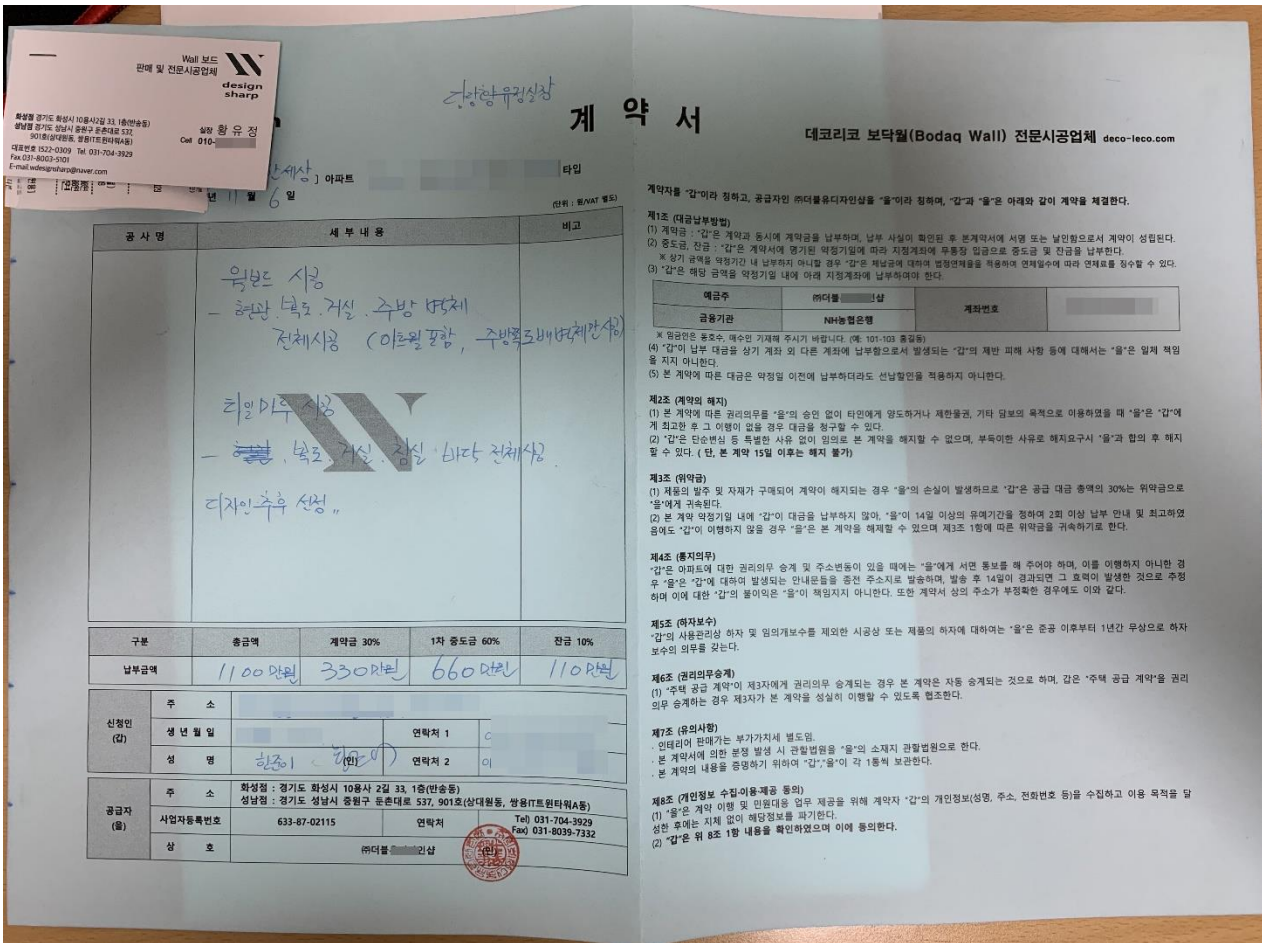
> 본 계약 15일 이후 해지 불가

> 제품의 발주 및 자재가 구매되어 계약 해지 시 총액 30% 위약금으로 귀속



3. 계약서 및 내용증명 서류

(1) 1차 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

<고객용>

담당자: 홍신각

| | | | | |
|-------|-----------------------------------|---------|----------------------|------------------------------|
| 현 장 명 | [Redacted] | | | |
| 입주예정일 | - 미정 - | 공 급 자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부가세별도) | |
| 완공예정일 | " | | 사업자번호 | 436-86-01139 |
| 공사총금액 | 25,000,000 | | 상 호 | (주)#디자인 |
| 계 약 금 | 1차계약금 330 카드승인. 2차계약금 170 계좌이체 | | 사 업 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2-17 901호 |
| 중 도 금 | - 분할 - | 전 화 번 호 | [Redacted] | |
| 잔 금 | 又 | 계 약 자 | 한 돈이 [Signature] | |
| | | 전 화 번 호 | [Redacted] | |
| | | 계 약 일 | 2021. 11. 26 | |

| 공 사 명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 <p>* 디자인 컨설팅, 시방서제출 *</p> <p>특이사랑 - 주방 냉광고광리튬 (발열, 수납, 광파)</p> | |
| | | |

인테리어 계약 해지 통고서



제목 : 실내건축공사업 미등록 업체로 확인됨을 원인으로 한 인테리어 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

[해지(해약)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501동 2604호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귀하의 소유 회사인 (주)더블유디자인샵(이하 '귀사') 과 2021년 11월 6일 월보드 및 타일마루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공사 금액 1100만원 중 계약금 30%인 330만원을 카드 결제로 지불하였고,
3. 본인은 기존 인테리어 계약 내용에 인테리어 공사 범위를 확장을 희망하여 2021년 11월 26일 총 견적 2500만원으로 귀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차 계약금 170만원을 사업자 대표인 귀하 명의 통장이 아닌 차명계좌(계좌주명: 김나현)로 현금 입금하였습니다.
4. 본인이 계약 체결 후 1차와 2차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두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자번호 및 상호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귀사는 2500만원 이상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실내건축공사업 미등록 업체임을 확인하였으며, 귀하는 면허 미소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체결한 계약으로 원인무효이므로 위 25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계약 취소를 통고하는바
5. 2022년 5월 13일까지 계약금 500만원을 본인 계좌(카카오뱅크 3333-01-8520579)에 조속히 반환하여 주시고 만일 이를 어길시 민.형사 상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차, 2차 인테리어 계약서 사본 각 1부.

2022. 05. 03
한 준이

5. 문의 사항

(1) 인테리어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 여부

- 1 차, 2 차 계약서 상 확인된 사업자번호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전문건설업체조회” 페이지와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체정보조회” 페이지에서 조회 시 업체 조회가 되지 않아 실내건축공사업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면허 사업자는 1500 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95 조의 2(벌칙) 제 1 항에 따라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민사 외 형사 고발 방법

- 2 번의 계약금 지불 시 카드 결제 영수증에서 확인된 이름과 사업주 명이 일치하지 않고, 2 차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주명과 사업자 명도 일치하지 않는 차명계좌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두 계약서 모두 부가세 별도임을 명시하고 카드결제 금액과 현금 결제 금액이 상이함을 대놓고 들어내고 있습니다. 정항 상 세금 포탈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계좌 이체한 170 만원에 대한 현금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위 무면허 건 및 현금 영수증 미발행 건으로 형사 고발을 진행한다면, 절차와 필요한 증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